

임상교원 업적평가규정(3-6-8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「교원업적평가규정」에 의거하여 의과대학 임상교원의 업적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의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의 대상) ① 이 규정은 전임 임상교원에게 적용한다.

② 전임 임상교원이라 함은 각 임상과의 교수, 부교수, 조교수를 말한다.(개정 2016.6.30.)

제3조(평가의 예외인정) 평가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.(개정 2016.6.30.)

1. 평가 기간 중 4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
2. 평가 기간 중 4개월 이상 해외 연수, 공무에 의한 출장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
3. 대학 처장급, 병원 부원장급 이상의 보직을 4개월 이상 수행한 경우

제4조(구분 및 정의) 임상교원의 업적은 진료, 교육, 연구, 봉사, 인성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임상교원업적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.(개정 2006.10.12., 2016.6.30.)

1. 진료영역이란 병원에서 수행한 진료 및 수술실적을 말한다.
2. 교육영역이란 강의 및 학생지도와 관련한 노력 및 실적을 말한다
3. 연구영역이란 저술활동, 연구논문 및 보고서, 학술발표 및 강연, 연구비 수탁활동 등을 말한다.
4. 봉사, 산학영역이란 교내 봉사활동, 교외 봉사활동, 취업·창업동아리 지도, 산업체 교류, 특허, 산업체 연구비 수주활동 등을 말한다.
5. 인성영역이란 협조성, 적극성, 책임감, 규율성, 대인관계(원내 및 환자 등)를 말한다.
6. <삭 제> (삭제 2016.6.30.)

제5조(평가 기간 및 기준) ① 의과대학 교원업적평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.(개정 2016.6.30.)

② 평가의 기준은 <별표> 의과대학 임상교원 업적평가 기준과 같다.(신설 2016.6.30.)

제6조(의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) ① 의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위원은 의과대학 교원 중 7명 이내로 구성한다.(개정 2005.6.29., 2016.6.30.)

② 위원장은 학장이 하며 위원은 학장이 임명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(개정 2016.6.30.)

제7조(의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) ① 의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(신설 2016.6.30.)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(신설 2016.6.30.)

제8조(의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심의사항) ① 의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(개정 2016.6.30.)

1. 평가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
2. 의과대학 교원업적평가 서식 결정에 관한 사항
3. 교원업적 기재사항의 확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
4. 업적 우수교원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사항
5. 기타 교원 업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평가 절차) ① 의과대학 교원은 평가 대상 기간의 업적에 대한 소정 양식의 임상교원 업적평가 보고서 및 증빙 서류를 당해 연도 2월말까지 의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 2016.6.30.)

② 의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제출된 교원업적평가 자료에 대한평가를 시행한 후 통보한다.(개정 2016.6.30.)

③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해당교원은 결과를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의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.(개정 2016.6.30.)

④ 의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는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재심사 한 후, 재심사 결과를 해당교원에게 통보한다.(개정 2016.6.30.)

⑤ 업적평가결과는 당해 교원 및 관계자 이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(신설 2016.6.30.)

제8조(우수업적 교수선정 및 지원) 우수 업적 교수 선정 및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우수 업적 교수 선정 : 우수 업적 교수의 선정은 전체 임상 교원 중 상위 10%의 임상 교원으로 하며, 임상교원업적평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에게 추천한다. 단, 우수한 국제전문학술지(SCI 등재 논문)에 발표한 자는 우수 업적 교수로 특별 추천할 수 있다.(개정 2005.6.29)
2. 우수 업적 교수에 대한 지원 : 우수 업적 교수는 해외 연수 대상자 선정, 교내 연구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연봉에 반영할 수 있다.(개정 2005.6.29)

부 칙

이 규정은 2003년 8월 27일부로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05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제4조의 적용은 2007년 1월 1일부터 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<별표>

의학과 임상교원 업적평가기준

■ 업적평가 배점표

병원평가(100점)			대학평가(100점)										
진료		인성	교육				연구			봉사, 산학			
80점		20점	(30점~50점)				(40점)			(10점~30점)			
정량	정성	정성평가	학생평가 · AL교과목평가	학생 상담	교수 개발	교육개선 노력 · 기타	연구 업적	연구 활동	수상 공훈	교내 봉사	교외 봉사	산학	
64점	16점	20점	20점	5점	5점	20점	40점			30점			

1. 교육영역과 봉사영역의 점수의 합이 60점을 초과할 수 없다.
2. 교육영역의 학생평가·AL교과목평가를 제외한 점수와 봉사, 산학영역의 점수 합은 30점을 초과할 수 없다.
3. 기타의 업적에 대해서는 업적평가위원회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한다.

임상교원 교육영역 평가 (30점~50점)

평가 지표		배점	인정 및 배점기준	점수
학생평가 AL교과목 평가	수업평가	8	* 강의평가점수 x 배점	
	AL수업평가		* AL수업평가 x 배점	
	AL수업계획서평가	4	* 교육질관리위원회(교육평가위원회) 평가	
	AL수업참관평가	2	* 교육질관리위원회(교육평가위원회) 평가	
	교육과정평가	6	* 교육과정평가 x 배점	
학생상담	학생상담	5	* 학생상담 건당(0.5점)	
교수개발	교육관련 워크샵	5	* 건당 1점	
	교육관련 세미나			
	의학교육 연수			
	의학교육관련 학회			
임상실습	임상실습평가	8	* 과정별 평가를 통한 점수부여(책임교수 +1점)	
교육 교육개선 노력	강의공개	20	* 강의 공개여부 (2점)	
	시험피드백		* 시험문항 피드백 자료 제출 (1점)	
	교육관련회의		* 교육관련 회의 참여교수 자료제출 건당 (1점)	
	교육자료개발		* 교육관련 회의 주관교수 자료제출 건당 (2점)	
	보충학습지도		* 교육용시청각 자료개발 건당 (1점)	
	강의록 배부		* CBL, TBL, PBL 모듈개발 건당 (2점)	
기타	교육과정 책임교수	20	* 동영상 자료개발 건당 (3점)	
	졸업시험출제		* 보충학습지도 건당 (1점)	
	OSCE&CPX		* 강의록배부(의학과에 한함) 5시간당 (1점)	
	동기유발학기		* 교육과정 책임교수 : 10점	
	의료인문학		* 졸업시험 : 출제관리 5점, 문제 개수당 0.2점	
	비전체험학습		* OSCE & CPX : 출제 관리 5점, 시험 감독 : 2점	
	입시참여		* 동기유발학기 : 책임교수 5 점, 참여교수 3점	
	학생지도		* 의료인문학 : 책임교수 10점, 참여교수는 강의 2시간 당 1점	
			* 비전체험실습 : 책임교수 10점, 참여교수 5점	
			* 입시참여 : 건당 1점	
			* 동아리, 키움Able, 학년지도교수 : 건당3점	

- ✓ 수업평가 점수는 의학과 강의평가·AL강의평가를 100%반영한다.
- ✓ 교육과정평가는 의학과 교육과정에 한하며 평균점수를 산출한다.
- ✓ 시험문항 피드백 자료는 시험실시 1주일 이내에 의과대학행정실에 제출
- ✓ 강의록, TBL 모듈, CBL 모듈, PBL 모듈, 동영상 자료는 강의 시작 3일 전까지 칼렌더시스템에 등록.
- ✓ 의학교육학교실 전임·전담교수는 교수개발 워크샵 주최 2점, 세미나 개최1점을 인정하며 교수개발 부분 배점 한도를 10점으로 한다.
- ✓ 교육관련회의 자료는 교육과정 시작 1주일 전 또는 교육과정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의과대학행정실에 제출
- ✓ 보충학습지도는 학기중 평가를 통해 성적이 저조한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지도, 재시험 실시 후 근거서류 및 결과 보고서
- ✓ 임상실습평가는 과정별 학생평가를 통하여 ABC등급으로 점수 부여(A:7점, B:6점, C:5점)

임상교원 연구영역 평가 (40점)

평 가지 표		배점	배점기준		인정여부 및 비율	점수
연구 업적 평가	논문	상한 없음	Science, Nature, Cell	200	1) 교신 또는 제 1저자는 100% 인정. 단, 교신저자 또는 제1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저자수로 나눈 점수를 인정함 단, 교내 기초임상교원의 공동연구는 100%인정 2) 공동저자의 경우 2인은 70%, 3인은 50%, 4인은 30%, 5인 이상은 20%를 인정 3) 학위논문은 당해 연도에 한함 4) SCI급 잡지에 게재된 총설은 200% 인정	
			SCI, SSCI	60		
			SCIE, A&HCI	40		
			Index medicus	30		
			한국연구재단등재지, 박사학위논문 국외일반학술지, 총설	20		
			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, 석사학위논문, 증례보고	10		
	저서	상한 없음	국외학술전문저서	50	1) 편저대표저자, 편저 각 장의 저자 100% 인정 2) 단행본 공동저자의 경우 1/n 인정 3) 국내외 전문학술서는 전공과 관련된 저서만 인정 4) ISBN 등록 도서만 인정	
			국내학술전문저서	40		
			전문번역서	40		
			일반번역서 교양 및 초중고 교과서	20		
연구 활동 평가	학술대회 발표	5	국제 학회발표	4	1) 학회에서 발표한 것에 한해 인정 2) 초청연자는 200%, 구연은 100%, 포스터는 50% 인정 3) 전임의 및 전공의 발표시 책임교수 점수로 인정	
			국내 학회발표	2		
	대학원생 지도	5	박사논문지도	4	* 학위논문지도는 학위수여자 수를 말하며 학위를 받는 당해 연도에 적용	
			석사논문지도	2		
	연구비 수탁		500만원(자연계) 250만원(인문사회계)	1	1) 산업체 연구비 제외 2) 연구책임자 2/(n+1), 공동연구자 1/(n+1) 3) 전공의는 n에서 제외	
	연구계획서 제출	5	건당	2	*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제출된 계획서에 한함 * 명곡의과학연구소 제출 계획서 건당 1점	
	워크샵 및 세미나 참석	5	워크샵 주최	3	1) 워크샵 주최는 직접 진행한 경우만 인정 2) 워크샵 참석은 인증서를 받은 것만 인정 3) 명곡의과학연구소 세미나 만 인정	
			워크샵 참석	2		
			세미나 참석	1		
	수상 공훈	국제학술상		건당	5	* 최대 1회 인정
국내학술상			건당	3		
교내학술상			건당	2		

임상교원 봉사, 산학영역 평가 (10~30점)

- 임상교원 봉사영역 평가

		평 가지 표	배점	배점기준	점수	
봉사	교내 봉사	행정보직	부처장/부학장	20	* 행정보직은 상위 1개만 적용	
			진료부장, 기획조정실장, QI실장, 부장, 소장, 교육수련부장, 홍보실장	15		
			진료과장	10		
	위원회 활동	대학교 위원회	의과대학 위원회, 병원위원회	6	1) 6개월 이상 활동시 점수 부여 (위원:1점) 2) 위원장은 위원점수의 2배를 배정한다.	
			교육질관리위원회 (교육평가위원회)	5		
		입시관련 홍보활동	대학교 단위 홍보 활동 학과단위 홍보활동	3	* 건당 1점	
	비정규 수업	타과 강의 지원	5	1) 타과 강의 지원 : 2 시간 당 1점 2) 원내외 강연 및 교육 : 건당 1점		
		강연 및 교육				
	대학 및 병원 정책 사업참여	책임자	5	* 실적제출시 의과대학 교원업적평가 위원회에서 심사		
		참가자				
	재정기여 및 장학금 확보	장학금 및 발전기금 유치	5	* 200만원 당 1점		
		기자재 및 도서 증여				
	교외 봉사	언론매체 기고 및 출연	중앙방송 출연	5	1) 동일내용을 여러 언론매체에 기고 및 출연 시 상위점수만 인정 2) 최대 6점 인정	
			지방방송 출연	3		
중앙지 보도 및 컬럼게재			3			
지방지 보도 및 컬럼게재			2			
기타 보도 및 컬럼게재			1			
학회 및 위원회 활동	학회 활동	15	1) 국제학회회장 및 전국학회 회장 10점 2) 전국학회 부회장, 편집위원장, 이사 3점 3) 정부 및 공공기관 위원 2점 4) 민간단체 위원 1점			
					위원회활동	
	각종 평가활동				국가시험에 관한 사항 과제 및 논문 심사	
봉사활동		의료봉사 또는 사회단체 봉사	1) 무보수 봉사활동을 의미 2) 4시간 이상인 경우, 1점 인정			
수상 실적			1) 총장표창, 중앙정부기관 건당 4점 2) 지방정부기관 및 공공단체 건당 2점 3) 민간단체 건당 1점			

임상교원 산학영역 평가

		평가지표		배점	배점기준	점수	
산학	교육	취업지도	취업실적(정규직)	5	* 50% 기준으로 1% 상승 시 0.1점		
		창업동아리 지도		2	* 건당 4점		
	봉사	장학금 유치	산업체 장학금 유치	5	* 200만원당 2점		
		산업체 교류	방문 특강		1	* 건당 1점	
			기타 산업체 지원 활동		2		
	산업체위원			2			
	연구	특허	국제특허			* 건당 10점	
			국내특허			* 건당 6점	
		산업체 연구비 수주	인문사회			* 250만원당 : 2점	
			자연계			* 500만원당 : 2점	